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정춘숙·김성주·김영진

김윤덕 · 김정호 · 윤후덕

이원욱 · 임종성 · 장경태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,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·운영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

그런데 기관의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,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,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관리·감독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.

이에,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·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·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,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,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- 3.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4. 인력지원전문기관에서 취소를 원하는 경우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	제17조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
관) ① ~ ③ (생 략)	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
<신 설>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
	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
	소하거나, 1년 이내의 기간을
	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
	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
	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	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	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	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
	업무를 행한 경우
	3.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요
	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
	<u>인된 경우</u>
	4. 인력지원전문기관에서 취소
	를 원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
	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
	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
	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.